진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9월 14일

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

진천군의회 규칙 제 44 호

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식 및 패용”을 “모형·제작·관리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회기”를 “진천군의회 의회기(이하 “의회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안에“의회”자”를 “안에 “의회”자”로, “진천군의회 라”를 ““진천군의회”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직경”을 “지름”으로, “색체”를 “색채”로 한다.

제4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관리)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과 같은법 시행령,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제6조(의원배지제식) 진천군의회 의원배지(이하 “의원배지”라 한다)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.

제7조의 제목 “(배지교부)”를 “(의원배지교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배지”를 “의원배지”로, “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항의 사유로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부담으로 한다”를 “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”로 한다.

①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의원 한 사람당 2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배지 패용 요령)”을 “(의원배지 패용 요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배지”를 “의원배지”로, “패용한다”를 “단다”로 한다.

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,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.

(별표 1)

의회기 규격 모형도



○ 의회기 바탕 : 청색

○ 무궁화마크 원형내부 : 흰색

○ 무궁화마크 : 금색

○ “의회” 글씨(원형내부) : 금색

○ “진천군의회” 글씨 : 흰색

(별표 2)

의 원 배 지 제 식

가. 모형 및 색채



○ 무궁화마크 원형내부 : 흰색

○ 무궁화마크 : 금색

○ “의회” 글씨 : 금색

나. 규 격

모 형	내 용	규 격
무 궁 화 형	5 지	1.8cm
화 대 형	5 지	1.4cm
화 반 원 형	1	1.0cm
원 자 막	의회	0.8cm

[별지 제1호서식]

진천군의회 의원배지 교부대장

번 호	대 상 자		제 작 연월일	교 부 연월일	수령인	비고	결 재		
	선거구	의원성명					팀장	과장	의장

[별지 제2호서식]

진천군의회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
	생년월일	
	의회명·의회대수·선거구	
재교부 신청 사유	[ ]분실·멸실 [ ]훼손 [ ]기타	
분실 사유		

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/인)

진천군의회의장 귀하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진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모형・제작・관리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의회기의 규정 등)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의회기의 규정 등) 진천군의회 의회기(이하 “의회기”라 한다)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마크 문장을 넣고 마크 문장 원형 안에“의회”자를 표시하고 기면 하단에 진천군의회 라 예서체로 표시한다.	2. ---------- ---------- 안에 “의회”자---------- ------- “진천군의회”라 ----------.
3.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하고 색체는 금색으로 한다.	3. ---- 지름---------- ---------- 색채---------- -----.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관리)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.	제4조(관리)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과 같은법 시행령, 「국기의 게양・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제6조(배지제식) ①의원 배지의	제6조(의원배지제식) 진천군의회

제식은 별표 2와 같다. ②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 및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.	의원배지(이하 “의원배지”라 한다)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.
제7조(배지교부) ①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.	제7조(의원배지교부) ①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의원 한 사람당 2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다.
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.	②의원배지----------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----------.
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부담으로 한다.	③제2항에 따라 ----------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.
제8조(배지 패용 요령) ①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.	제8조(의원배지 패용 요령) ①의원배지--- 단다.